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7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신장식·정춘생·조 국

김준형 • 이해민 • 차규근

박은정 · 김재원 · 김선민

강경숙 · 서왕진 · 황운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를 때, 일반적으로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에 따른 배상 뿐 아 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대 해서도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함

하지만 사망자가 군인 등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, 그 유족은 「민법」 및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게 되는데, 그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음. 또한,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받을 수 있을 때에는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「국가배상법」에따른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,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거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.

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므로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 법률 제 호
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·군무원·경 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·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,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배상책임) ①・② (생 략	제2조(배상책임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
	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・군무
	원·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
	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
	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
	있다.